

평양국제토론회 토론회

1993, 11, 7~8

이희재
7-1

《위안부》의 강제징집 및 강제로동에 대한
군관리와 관할의 실태

작가 니시노 루미코

《위안부》의 강제징집 및 강제로동에 대한

군관리와 관할의 실태

머리말

지난 8월 4일 일본정부는 《중군위안부》에 대한 제2차 조사보고를 발표하고 《위안소》정책이 총체적으로 강제적이였다고 인정하였다. 정부의 이 발표는 종래의것에 비하면 일정한 평가를 할수 있지만 조사내용은 피해자의 증언청취도 포함하여 실로 불충분한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최근 일본국내의 학자들과 연구자들에 의해 착실한 조사연구가 진척됨으로써 위안소정책의 실태와 그 강제성의 실태가 조금씩 해명되고있다.

이 토론은 지금까지 일본의 학자들과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진 위안소정책에 대하여 정리하고 고찰한것이다.

1. 위안소정책의 전개구분

《위안부》징집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었다. 군당국이 인가한 업자가 알선자에게 의뢰하여 징집한 경우와 관헌이 직접 징집한 경우이다.

위방소 정책은 크게 3기로 나누어볼수 있다. 1기는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상해사변을 전후한 시기 이후 (현재 확인된 창설기는 1932년에 상해에 설치된 해군위안소이다.), 2기는 일중전면전쟁이 개시된 1937년 이후, 3기가 1941년 12월 아세아태평양전쟁개시 이후이다. 이 시기 구분은 징집과 련행전개방식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2. 군위안소 창설 시기 (제1기), 정책확대시기 (제2기)의 위안소 정책

1932년 상해사변때의 위안소설치(상해)가 현재까지 공문서상 확인된 위안소설치의 창설이다. 상해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증원되었기때문에 《병사들에 대한 위안기관의 일환으로서》 해군위안소가 설치되었다.

그해 당시 상해파견군 부참모장이었던 오까무라 네이지는 일본군군인들의 련속되는 강간사건을 우려하여 그 방지책으로서 위안소창설을 발기하였다. 그는 《위안부》징집을 나가사끼현 지사에게 의뢰하여 벌써 그해 3월에 상해에 군위안소를 개설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군군인들의 강간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것을 막을 목적밑에

군위안소 창설이 발기되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위안소 정책이 급속히 확대되는 계기로 된것이
1937년의 일중전면전쟁개시에 의한 남경진격이었다.

남경대학살 등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중국인 일반부녀
자들에 대한 강간과 살륙이 많이 감행되었으며 그러한
사태가 군위안소 증설을 다그치게 하였다.

1937년당시의 위안소설치는 중지나방면군의 지시에
의한것이었다. 지시에 따라 상해파견군이 군위안소를 설
치한것이다. (참모부 제2과 조이사무중좌가 설치를 담
당하였다.) 1938년초 상해 양가택에 설치된 위안소
는 군이 직할하고 직접 경영하는 위안소였다.

부대가 위안소 개설을 위하여 위안부를 모집한것이다.

《내지》에서 위안부를 데려올 때에는 해당지역 군사
령부에서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수속을 하여야 했다.

〈이 시기의 징집방법〉

《위안부》징집에 대하여서는 군사령부 (북지나방면군,
중지나방면군, 제21군 등의 각 군)가 통제하였다.

담당자는 군사령부의 후방참모였다. 징집실행방법은
두가지로 분류된다.

- ① 각 사단이 독자적으로 업자를 리용하여 징집

② 위탁업자에게 편의를 도모해주어 징집을 의뢰

《위안부》로 된 여성들의 민족별을 보면 조선인 여성들이 압도적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전선에서는 중국인 여성들을 징집한 예도 많이 볼수 있다.

1937년말 위안소 개설의 담당자(군)가 중국의 양주자치위원회(치안유지회)와 함께 중국인녀성을 징집한 실례도 있다.

〈업 자〉

군의 승낙을 받지 않은 업자들의 《지나》도항이 눈에 띄게 되었다.

또한 군의 방해라는 간판을 리용하여 《위안부》를 모집하는 업자나 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혹은 유괴비슷한 방법으로 여성들을 모집하는 업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군은 앞으로 ① 모집은 파견군이 통제한다.

② 모집업자선정은 군이 주도적절하게 한다. ③ 모집은 관계 지방의 헌병이나 경찰당국과의 연계밑에 진행한다. 등등을 결정하였다.

바로 군의 완전지휘하에 징집이 진행된것이다.

〈도 항〉

《내지》에서 중국의 군위안소로 련행된 여성은 일본

인뿐이 아니었다. 일본에 살던 재일조선 여성들도 있었다.

그것을 증명하는 실례로서 재일조선인 여성이 상해의 해군위안소 위안부로 되기 위하여 도항증명서를 후꾸오까현 야하따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료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재일조선인을 련행한 첫 자료이다.

바다를 건너자면 도항증명서가 필요하였는데 위안소업자들의 도항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었다. 위안부들의 도항은 더 특별히 취급되었다. 도항증명서를 받기 위하여서는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였다. 이 무렵에는 증명서발급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특수부녀(기생, 술집접대부, 식당접대부, 군위안소고용자)를 결원보충할 때는 특별히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또한 령사관이 없는 지역에 주둔하는 군이 위안부를 데려갈 경우에는 해당군의 증명서에 따라 제일 가까운 령사관의 증명서(지나도항사유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가 있으면 허가되었으며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부녀》(위안부)의 지나도항사유증명서 및 신분증명서 발급은 극단적으로 제한하지 말테 대하여 지시되었다. 군위안소증설을 서두르던 나머지 《위안부》징집, 련행이 여

러가지 규칙과 법을 위반하고 감행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국제법을 어떻게 위반하였는가를 보기 위하여 1925년에 일본이 가입한 《매춘을 시키기 위한 부녀 매매단속에 관한 국제조약》을 실례로 들어보자.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추잡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미성년(만 21살미만)에게 매춘시켜서는 안되며 또 비록 성년녀성이라 할지라도 사기와 폭행, 협박, 권력탐용 기타 일체 강제수단에 의해 징집해서는 안된다는것이 정해져있다.

그러나 실태를 보면 군의 위탁업자 혹은 관헌에 의해 사기와 강제수단에 의한 위법행위가 감행되고있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매춘금지조약을 조선, 대만, 관동조치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데 대하여 의사표시하였다.

이 국제법의 적용을 모면할 길을 만든것이다.

이로부터 조선인 여성들에게 징집의 예봉이 집중된 실태가 용의주도하게 준비된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정책이였다는것을 부인할수 없다. 또한 위안소정책의 지시, 명령의 발신지가 일본국내였다는데로부터 비록 조선녀성의 경우에도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당시 일본은 이 국제법을 념두에 두고있지 않았는가, 사실에 있어서는 매우 강하게 의식하고있었다는것을 역사적사료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 이 국제조약의 규정에 어긋나지만 북지나, 중지나 방면에 가는 사람들에 한하여 묵인하고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라는 통지가 내무성 정보국장으로부터 각 청, 부, 현 장관들앞으로 하달되어있었다. (《지나도항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1938년 2월 23일)

3. 제 3기의 위안소정책의 실태

〈위안부요청, 설치〉

1941년에 아세아태평양전쟁이 개시된 다음 해외에 출동한 부대는 가장 많을 때 350만이었다. 병력증강에 따라 시급하게 대량적인 《위안부》 징집이 필요하였다.

이 시기 남방총군이 관할 지역에 대한 위안부들의 배치를 하였다. 현지군이 《위안부》를 데려오면 후방주임참모가 담당하였고 사단이 위안소를 설치하는 방식이었다. 1944년 헌병분견대장은 제116사단의 후방주임참모로부터 위안부징집을 의뢰받았다. 밀정을 리용하여 중국인

위안부 10여명을 모집시켜 사단이 위안소를 설치한 다음 사단부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실례도 있다.

위안소 경영에 종사한 업자는 군종속자의 자격을 가져야 하였다. 말하자면 군과 위탁, 계약 관계에 있었고 업자도 군의 지휘하에 있었던 것이다. 해군인 경우에는 《특별요원》으로 징집하였다. 군이 업자와 협정을 맺고 남방에 보내는 경우 중앙의 통제하에 징집, 분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4. 위안소 생활에 대한 군관리, 통제 실태

① 군관리에서 볼수 있는 성병검진

군관리에서 우선 들수 있는것이 《위안부》에 대해 실시하던 성병검진이다. 성병검진은 군관리하에 주 1회 정기적으로 군의에 의한 검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부대회보로 군인들에게 통지되었다.

성병에 걸린 《위안부》한테는 가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이 하달되었다. 군은 군인들이 성병에 감염되는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였다. 성병은 전투력을 후퇴시키는것으로서 그에 걸린 병사는 강직, 영창, 처벌 등의 처벌까지 받았다.

지나파견군은 군에서 한명당 2개월에 1개의 위생고무주머니를 교부받았다. 1달간의 사용량은 약 43000개이고 경리부가 보급처리를 담당하였다.

군인들의 성병예방을 위해 위생고무주머니를 사용하는데 대한 엄명이 하달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위안부》들이 성병에 감염되어 고통을 당하였다.

《606호》라고 불리운 매독치료주사를 놓군했으나 그것이 후유증을 가져왔으며 약치료비는 《위안부》들의 부담이었으며 빚에 가산되었다. 《위안부》였던 한 여성은 중병에 걸린 《위안부》들은 내버려졌거나 살해되었다고 증언하고있다.

② 군, 헌병, 령사관의 협력

륙해군에 속한 위안소는 육해군의 직접적경영감독하에 있었다는 사실이 륵군, 해군, 외무성의 3성관계자회의의 결정사항으로서 남경총사령관의 문서에 기록되어있다.

거기에는 위안소에 출입하는 군인군속에 대한 단속은 헌병대가 처리할것, 앞으로 병참부의 지도밑에 설치되는 군위안소는 헌병대가 단속하며 이미 설치되어있는 위안소에 대하여서는 병참부가 《일반거류민의 편리도 고려하여》 그 일부를 군위안소에 편입하여 정리할것 등도 결

정되었다. 또한 군위안소를 군이 허가했을 경우에는 령사관이 사무처리를 하며 해당군의 현병은 위안소의 경영상태, 영업자의 본적, 주소성명, 연령, 출생, 사망 및 기타 신분상의 변동을 령사관에 통보해야 한다는것도 결정되어 있었다. 바로 위안소경영은 군, 현병, 령사관의 배속하에 있었다고 말할수 있다.

③ 구속상태

아세아, 태평양전쟁도입이후의 3기에는 《위안부》의 징집이 더 강제적으로 빈번히 감행되었다. 또 관리통제도 면밀해졌다. 각 부대에서 위안소규정이 작성되었다.

예하면 마스바페섬경비대의 《군인구락부규정》에는 사용일정표, 사용시간, 위안료 등과 함께 《료금은 위안부에게 줄것》, 《고무주머니 및 예방약(한조 5전)은 위안부에게서 받으며 예방은 반드시 실행하여 성병에 걸리지 말것》, 《술에 취하여 폭행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것》 등이 규정되어있었으며 위안소에 가는 하사관, 병사는 중대장이 발행하는 외출증을 가지고 가는것을 의무화하고있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위안부》의 행동도 규제되고 구속상태에 있었다.

필리핀군정감부 비사야지부에서는 위안소에 대한 감독 지도를 군정감부가 하고 있었다. 경비대군의 위생에 관한 감독 지도를 담당하고 위안소경영자에게 《위안부》들의 외출을 엄금시켰으며 군인들이 《위안부》를 데리고 나가는 것도 금지하였다. 《위안부》들의 산보는 매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밖의 시간에는 필리핀섬군정감부 비사야지부이로이로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다. 《위안부》에게는 외출의 자유조차 주지 않았던 것이다.

④ 보 수

세레베스의 제2군사령부가 설치한 위안소의 경우 경영은 일본사관에게 맡겼으나 군사령부의 감독 밑에 두고 설비는 군사령부가 뒀다.

의복류, 일용품, 화장품 등은 군사령부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되었다.

수입의 50%는 《위안부》에게 주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돌렸다. 여기에 있던 《위안부》는 도라지야족 7명, 중국인 1명이였다. 또 빠레빠레경비대의 경우 육군중좌가 책임자로 되고 부대가 직접 경영하고 있었다.

《위안부》의 수입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봉급으로 지

불되었다.

이러한 때는 이것 하나만인데 려하면 《4대 6》 즉 6을 《위안부》의 수입으로 하였다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빛이나 생활비, 식비 등이 공제되어 일부에는 전혀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불된 군포는 패전과 동시에 가치를 잃고 휴지장이나 다른없이 되어버렸다.

선대금을 받고 위안소에 련행당한 여성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어나는 빛에 의해 더욱 구속되었다.

보수라고 하여도 실제로는 그것이 여성들을 돕는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맺는말

이상 지금까지 일본국내에서 발견된 몇 가지 사료들은 《위안부》였던 여성들의 증언을 증명하고있다.

녀자정신대라는 미명하에 감행된 모집이 여러건 있었으나 그것은 사기와 권력탐용에 의한 징집을 금지한 국제법 위반한 행위였다. 《돈을 벌수 있는 일감이 있다.》는 권유도 사기에 의한 강제수단을 리용한 징집으

로서 위법행위이다.

위안소에 련행당하여 가셔도 녀성들에게는 행동의 자유가 없었고 생활전반이 군의 관리와 지배하에 있었다.

또한 경영을 맡고있던 업자들도 군의 관할하에 있었다.

《위안부》가 군인들로부터 차고치는 폭행을 당했다는 여러 이전 《위안부》들의 증언은 사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안부》가 임신한 경우에도 대책이 충분히 세워지지 않았다. 제일 이전 《위안부》녀성은 다섯 번 임신하여 2명을 낳았는데 낳자마자 중국인과 조선인들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녀성의 팔에는 《가네꼬》라는 이름을 새긴 인묵이 남아있고 등에는 군도로 상처를 입힌 흔적이 처참하게 남아있다.

위안부정책은 국가정책이었다. 녀성들의 몸과 마음을 다 같이 감금구속하고 상처를 입히고 인간의 존엄을 깎그리 빼앗아 군인들의 성노예로 만들어놓고도 일본군은 패전할 때 녀성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지도 않았고 귀환의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방공호에 넣고 수류탄으로 폭파한 실패와 내버려둔 실패도 있다. 패전시에 녀성들의 귀환과 보호를 태공한

것은 강제징집, 강제로동과 함께 중대하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것이다.